조정사례 2021 - 4호
(2021.10.29.)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

'무상(호의)동승 책임 제한' 관련 분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SUPERVISORY SERVICE

본 조정사례는 동일 분쟁의 반복접수를 방지하고 일률적인 분쟁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사례의 공유를 통해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손해의 분담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 요

□ 사건번호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21-140호

□ 주요쟁점

○ 대가의 지불 없이 이혼 상태의 전남편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가해자)의 책임감경 인정여부

□ 진행사항(세부)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21-140호**

- 2019.10. : 교통사고 발생(피신청인차량이 고속도로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4차로 후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신청인차량을 발견하고 피양을 시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노외로 추락한 비접촉 사고 / 골반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수부 주상골 골절, 우측 제4, 5 중수골 골절, 척골골절, 요골골절, 쇄골 골절,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흉추 8번, 11번 압박골절, 경추 4번 골절 등)

- 2020.07. : 신청인 탑승차량 35% 과실 확정.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결정)

- 2021.04. : 신청인 과실 적용 관련 분쟁 발생.

- 2021.07. : 공제분쟁조정신청.

□ 주장사항

신청인

ㅇ **신청인과 운전자는 법률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피해자측 과실, 무상(호의) 동승 감액 불가**

1) 신청인과 피해차량 운전자는 10여년 전 법률상 이혼한 상태로 전 남편과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이며 다른 직업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인정하는 피해자측 과실 이론 적용은 부당함

2) 기본적인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입장인바, 무상(호의)동승 감액 역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물을 수 없음을 주장

피신청인

ㅇ **신청인과 탑승차량 운전자(전남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곳으로 신고되었으므로 피해자 측 과실 이론 적용(35% 인정) 타당**

1)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35%의 과실 적용 주장

Ⅱ 조정 결과

▣ (2021-140호)

○ 신청인과 운전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측 과실 미적용, 다만, 신청인의 운행이익 일부 공유를 인정하여 호의동승 감액 20% 인정

Ⅲ 결정 이유

○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본 사고 발생 경위(이혼 위자료 상의를 위해 의논 후 귀가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전남편의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이익을 일부 공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붙임 1. 관련 법규 및 이론

□ 과실상계의 의의 및 관련 법령

○ **'과실상계' 의 의의**

불법행위제도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합리적인 제한을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피해자 측 과실의 의의와 적용 취지

○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우선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과실자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하게 되나 다른 과실자와 피해자 본인 사이에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족관계, 고용관계 등)에 있다면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상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임

□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참조),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 무상(호의)동승의 의의 및 책임 제한 유형

○ **무상동승이란 대가의 지불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동승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과실 또는 운전자의 과실을 어떠한 범위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1)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감경) 사유로서의 적용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

→ 무상동승 자체를 상계되어야 할 과실의 하나로 보지는 않지만 무상동승자에게 그 운행에 의하여 얻는 이익과 그 운행에 미치는 지배의 정도에 따라 비율적인 운행자성 취득을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타인성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

2)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무상동승한 경우 기대되는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제한(안전운전 촉구의무, 음주운전 방지의무, 안전벨트 착용의무 등)

붙임 2. 관련 판례 및 사례

1)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2다87263)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이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서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2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소외 1 운전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사실, ③ 망인과 소외 2는 사고 당시 연인 사이로서 벚꽃 구경을 가자는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벚꽃 구경을 가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차량의 운행목적, 망인과 소외 2의 인적 관계, 망인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므로 소외 2 측에게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 제한은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이나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까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소외 2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대법원 2013다45938)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88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등 참조).

3) 같은 부대 소속 조종사인 망인과 함께 비상 소집명령을 받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속부대로 가는데 같은 부대 소속 조종사인 피해자가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구고등법원 92나2074)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한 소위 호의동승의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및 동승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신을 살리고 또 오늘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각종 보험에의 가입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이 더욱 확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경할 경우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부대 소속 조종사인 망소외 1과 함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망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속부대로 가는데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단순한 무상동승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감경) 관련 사례

1) 무상(호의동승) 책임 감경 부정사례

① 피해자가 동료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탑승하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충격한 경우 무상동승 감액 배척,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5%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5099)

② 중·고등학교 선배가 시장조사 목적으로 시내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무상동승 책임제한 부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73065)

③ 알고 지내는 언니의 시동생인 사고 차량 운전자 갑과 저녁식사를 한 후 갑의 사무실로 함께 가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무상동승 책임제한 부정(대법원 2009다7854)

④ 사고차량 운전자인 갑이 자신이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을 채용하려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무상동승 책임제한 부정 (대법원 2002다30725)

⑤ 피해자가 매형의 초청을 받아 그가 사주는 저녁을 먹고 매형 운전 차량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무상동승 감액 불인(대법원 2000다65185)

⑥ 사고 자동차 소유자 갑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상동승 감액 불인(대법원 2000다47507)

⑦ 갑이 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산악회 회원인 을과 함께 산행을 하여 오면서 을로부터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오던 중, 을이 방학으로 놀고 있는 그의 조카인 피해자들을 산행 길에 데리고 와 위 차량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설악산에 가서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상동승 감액 불인(대법원 98다54892)

⑧ 공무원인 갑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에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귀청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상동승 감액 불인 (대법원 97다36873)

⑨ 피해자가 직장인 A회사와 같은 계열사인 B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B회사의 직원으로서 귀가길의 운전책임을 진 갑이 운전하는 B회사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길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상동승 감액 불인 (대법원 98다34362)

⑩ 운전자가 사고 당일 직장동료인 갑의 소개로 갑의 애인인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갑과 다른 직장동료인 을 및 피해자와 함께 횟집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편승시킨 경우 무상동승 감액 불인 (대법원 96다12382)

⑪ 피해자가 다른 출판사 영업부장인 갑으로부터 전주 시내의 서점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출판사의 업무도 처리할 겸 갑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무상동승감액 불인 (대법원 954다37639)

⑫ 갑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편승시킨 경우 무상동승 감액 불인(대법원 94다32917)

2) 무상(호의동승) 책임 감경 인정사례

① 피해자가 친구인 갑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피고가 A업체에 배달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서 갑이 운전기사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10% 책임 감경 (대법원 98다24877)

② 소규모의 사업체 대표인 피해자가 동생인 갑을 고용하여 갑 소유의 차량을 위 사업체의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받아 거의 매일 이를 업무에 이용하여 오던 중, 갑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거래처를 방문하여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 책임 감경(대법원 96다2446)

③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갑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갑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 감경(대법원 97다35344)

④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갑과 함께 서울 소재 A호텔의 식음료부에 근무하는 호텔종업원인 피해자가 그들을 포함한 같은 부서 소속 종업원 13명이 호텔 비수기를 맞아 2개 조로 나뉘어 조 단위로 상호 교대하여 1박 2일 일정의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계획에 따라서 2조에 배치되어 위 차량을 포함한 2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5% 감경(대법원 94다61625)

⑤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가 피해자의 혼례식 전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약혼녀 집에 함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태우고 오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액 감경 인정(대법원 93다13056)

⑥ 피고회사 택시기사인 갑이 비번이어서 집에서 쉬던 중 동거녀의 언니가 놀러와 함께 어울리다가 나중에 동거녀의 언니를 대구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사고 전날 저녁 무렵 피고회사로부터 비번 중인 택시를 가사사유로 출고 받아 집 앞에 세워두었다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잠을 자다 말고 위 택시에 동거녀와 그 언니를 태우고 대구로 향하던 중 동거녀의 언니가 사망한 경우 손해액 감경 인정(대법원 91다28177)

⑦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배상책임 감경 인정(대법원 91다40933)

□ 과실상계 관련 사례

1) 과실상계 부정사례

① 피해자가 운전자의 가족과 함께 산나물을 채취하러 가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25%의 상태에 있었고, 6명 정원인 사고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여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다48675)

②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99다31667)

③ 피해자가 운전자와 함께 그의 승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스키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99다26429)

④ 운전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구인 피해자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열차 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화가 작동 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다가 때마침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망인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고, 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98다53141)

⑤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 및 소유자와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 원고가 함께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에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

였는데 사고 승용차가 과속으로 진행 중 차도를 침범하여 불법 주차된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한 사실 만으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속으로 운전하지 말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98다8820)

⑥ 운전자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을 태운 소형 승용차를 과속 주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 방향의 화물차와 충돌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17세의 여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운전도 못하므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95다43181)

2) 과실상계 인정사례

① 피해자가 고교 동창인 차량 운전자와 함께 술을 먹고(운전자 혈중 알콜농도 0.158%) 일반도로를 시속 약 118km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식당 담벽을 충돌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30%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7838)

②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이 좌전도 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도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어야 하고 이후에는 운전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운전자에게 각별히 안전 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과실 30% 인정

③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가 사고 전날 밤에 일을 마치고 같은 식당 종업원인 갑, 을과 함께 평소 안면이 있던 병의 일식집 개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갑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자정 무렵 산에 갔다가 새벽 6시경 다시 부산으로 출발하여 돌아오던 중 갑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갑이 밤늦게까지 과로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새벽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갑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

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었던 잘못이 있음과 동승 경위를 들어 20% 과실상계(대법원 2002다33052)

④ 새벽 2시경 무면허인 17세의 갑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들이 갑의 아버지 차로 놀러가자고 제의하자, 아버지 몰래 피해자들을 태우고 간선도로를 무단운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제지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도 미착용한 경우 피해자들 과실 45% 인정(대법원 2001다80631)

⑤ 피해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와 친구 사이로 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함께 물품 배달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 집에서 같이 화투 등을 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려는 운전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여 동승하여 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포함하여 과실 25% 인정(대법원 2000다10017)

⑥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인 갑이 피해자를 태우고 회사의 다른 직원 문상에 다녀오던 길에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으로서도 무상으로 동승하였으면 장거리 운행에 피곤하여 집중력이 떨어진 갑으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25%의 과실 적용(대법원 2000다19496)

⑦ 운전 면허도 없고, 현지의 도로사정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하는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안전띠를 미착용한 경우 30% 과실 적용(대법원 99다40722)

⑧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동승하였고 안전띠 미착용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40% 적용(대법원 98다7131)

⑨ 피해자가 다른 작업 인부들과 철야 작업을 마치고 함께 1시간 반 가량 음주를 곁들인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20% 참작(대법원 95다29390)

⑩ 야간에 피해자가 동거남에게 바람을 쐬고 싶다고 제의하여, 운전면허도 없고 음주 상태인 동거남 운전의 오토바이에 안전모 없이 뒷좌석에 동승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60% 참작(대법원 97다27398)

⑪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의 오토바이(미등록)에 뒤에 탑승하여 이동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위반한 채로 진행하다가 역시 신호 위반으로 진행 중이던 버스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모 미착용, 안전운전촉구 미이행 과실 30% 적용(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4950)

붙임 3.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2021-140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안

1. 번호 및 사건명 : 제5-28호 (분쟁 2021-140호) 대인손해배상분쟁

2. 분쟁 당사자

ㅇ 신 청 인 : 안○○

ㅇ 피신청인 :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3.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가. 사실관계

ㅇ 피신청인은 조합원 ○○○○○와의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계약자동차 : 충남○○○○, 공제기간 : 2019.○○.○○.~2020.○○.○○.)을 체결한 사실.

ㅇ 2019.○○.○○. 10:30분경 피신청인차량이 ○○○도 ○○시 ○○○ IC 부근 고속도로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4차로 후행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신청인차량을 피양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노외로 추락한 비접촉 사고. (신청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와 이혼한 상태의 동승자, 피해차량 과실 35% 확정)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가) 피신청인 측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을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35%의 피해차량 운전자 과실 적용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이혼(2007년 ○월)한 이후 신청인은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고 있는바(전 남편인 피해차량 운전자는 충북 ○○군 ○○면 거주중), **신청인과 전남편은 더 이상의 혼인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어떠한 과실도 물을 수 없음**을 주장. (제적등본,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현재 거주지 촬영사진 참고)

나) 신청인은 본 사고로 골반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수부 주상골 골절, 우측 제4, 5 중수골 골절, 척골골절, 요골골절, 쇄골 골절,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흉추 8번, 11번 압박골절, 경추 4번 골절의 부상을 입고 수술 및 상당 기간 입,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증 및 운동 범위의 제한이 잔존하는바, 신청인이 발급한 장해진단서에 따라 **우측 견관절 Ⅱ-A-4 항 18% 한시 2년, 우측 수관절 Ⅲ-A-2 항 13% 한시 2년, 우측 제4, 5 수지 Ⅳ-B-2 항 각 4% 영구, 골반골절 I-4 항 27% 영구, 우측 고관절 Ⅱ-A-1항 12% 영구, 요추 2번 척추 I-A-1-d 항 29%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다) 신청인은 **우측 관자놀이 함몰반흔, 우측 견관절, 골반 및 하지, 수부 등에 총 56cm 이상의 선상 반흔**이 잔존하는바, 신청인 측에서 발급한 성형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47,680,000원의 성형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2) 피신청인

가)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92다54753),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법률자문 회신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상 이혼사실은 확인되나 **2021.04.○○.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관계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과실은 35%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의료자문 회신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우측 수관절, 우측 고관절에 대한 장해는 이견이 없으나 **우측 제4, 5수지 Ⅳ-B-2 항 각 2% 한시 2년, 요추 2번 척추 I-A-1-d 항 14.5% 한시 3년의 장해를 인정하되 골반골 장해는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다) 신청인의 성형 반흔 부위 중 고관절 및 장골 골절수술 반흔은 비노출 부위인 점, 이를 제외한 중수골, 주상골, 안면부위 수술 반흔은 반흔성형술 및 레이저술로 호전이 예상되는 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고려하여 **6,400,000원의 성형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4. 조정결정 사항

가. 의결사항

이 사건은 2021년 제5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과실 20%, 우측 견관절 장해 18% 한시 2년, 우측 수관절 장해 13% 한시 3년, 우측 고관절 12% 영구장해, 우측 제4-5수지 각 4% 한시 2년, 골반골 골절 장해 13.5% 한시 3년, 척주체 장해 14.5% 한시 5년, 성형 향후 치료비 10,000,000원, 직불치료비 458,0

40원을 인정하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산정 기초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기준에 따라 100,000,000원으로 적용(한시장해는 10년 환산)하여 법원 예상판결금액의 85%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나. 이 유

①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②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97다35344 판결 등).

③ 피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과 전남편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로 신고되어있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 측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현재 거주지 사진 등으로 전남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 제출자료만으로는 신청인과 전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다만, 신청인의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전남편의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④ 양 당사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 우측 견관절 II-A-4항 18% 한시 2년, 우측 수관절 III-A-2항 13% 한시 3년, 우측 고관절 II-A-1항 12% 영구장해, 우측 제4, 5 수지 IV-B-2항 각 4% 한시 2년, 골반골(좌측 비구 후면)골절 II-1항 27%의 1/2인 13.5% 한시 3년, 척주체 I-A-1-d 항 29%의 1/2인 14.5% 한시 5년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⑤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치료비 458,040원은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판단되는바,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⑥ 신청인의 나이, 사고 발생 경위, 치료 경과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고려하여 성형 향후 치료비 10,000,000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⑦ 신청인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산정 기초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의 기준 100,000,000원을 기초로 한시 장해는 10년으로 환산(견관절 1/5, 수관절 3/10, 수지 1/5, 골반골 3/10, 척주체 1/2) 후 과실 및 장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⑧ 본 조정안을 기초로 산출된 손해배상금은 예상판결액 기준으로서 소송경제의 이익을 고려하여 총 손해액의 85%를 인정하되 기지급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의결사항과 같이 조정한다.

2021년 9월 29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